

특 집

수출신용보증제도

I. 신용보증의 개요 및 특징

1. 개 요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발행한 화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한 후 수출대금의 미결제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은행의 손실을 무조건부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증의 성격

수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보증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을 포기한 연대보증

※ 최고·검색의 항변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우선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 할 것으로 항변하는 권리

2. 제도의 특징

가. 중소기업의 수출금융 이용 원활화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시 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가 외국환은행 앞으로 무조건 지급하므로 수출신용보증서의 정규 담보기능이 인정되어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화환어음을 매입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중소기업 수출자도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수출금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나. 과감한 신시장개척 지원

통상의 보증과는 달리 수출자앞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수출자의 과감한 신시장개척등을 지원한다.

다. 무담보 보증

보증서 발급에 있어 별도의 인적·물적담보를 취득하지 않으며 저렴한 보증료로 간편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통상의 지급보증과의 차이점〉

구 분	수출신용보증	통상의 지급보증
대상거래	수출거래	금융기관의 대출거래등
담보위험	수출대금 미결제 위험	대출금의 미상환 위험
타 담보 취득여부	타담보를 요구하지 않음	인적·물적 담보 취득
구상권 행사	수출자 귀책시에만 구상	보증채무이행시 무조건 구상

수출어음보험의 담보위험

신용위험 : 어음지급인의 경영악화에 따른 대금지급지연 또는 지급 거절과 어음지급인의 파산에 따른 지급불능

비상위험 : 수입국정부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송금 제한조치 (중남미 누적채무국 등)

수입국에서의 전쟁(이라크)·혁명(이란) 등

II. 제도의 내용

1. 운영방식

가. 수출어음보험과 연계운용

수출어음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된 건에
한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계운용사유

통상의 보증제도는 보증채무 이행시 보증의뢰인(수출자)에게 무조건 구상하게 되나 보증제도를 수출어음보험과 연계하여 운용하게 되면 수출대금 미결제 사유가 수출어음보험의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게 된다.

※ 수출신용보증과 수출어음보험 업무처리는 동일한 양식에 의거 일괄처리됨.

나. 회전한도 거래방식으로 운영

수출자와 수입자의 거래에 대하여 보증에 붙일 수 있는 보증한도를 사전에 책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보증관계를 성립시키며 기보증한 수출거래가 결제되고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되살아나는 회전운용방식이다.

2. 적격수출자

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

수출업력 2년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미화 30만불 이상인 기업

나. 대기업인 경우

수출업력 3년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미화 300만불 이상인 기업

※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 가입업체인 경우
위 요건에 관계없이 이용가능하다.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 : 수출어음보험
제도 참조)

3. 적격보증 대상거래

수출어음보험 관계가 성립한 거래이며 수
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360일 이내이고 본지사간 거래(동일한 본
사와 지사간 거래 포함)가 아니어야 한다.

4. 보증조건

보증금액 : 어음금액(수출금액)의 90%

산출방법

화환어음금액 ×

매입일의 대고객전신환 매입율 × 90%

보증기간 : 화환어음의 매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보증요율〉

보증료기간(일)	보증요율 (%)
60	0.10
90	0.15
120	0.20
150	0.25
180	0.30
180일 초과	매 30일마다 0.05%씩 가산

* 보증대상 수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위
요율의 3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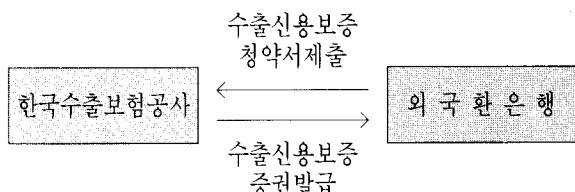
III. 업무처리 절차

1. 보증절차

가. 수출신용보증계약의 체결

(공사↔외국환은행)

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한 후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은행에
부담하게 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은행과 체결한다.



보증약관의 주요내용

- 신용보증의 내용
- 적격보증 대상거래
- 면책사항
- 신용보증한도
- 화환어음 매입기준

나.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의뢰

(수출자→공사)

당해 수출거래전 계약추진시 거래당사자
의 신용조사를 의뢰하며 특히 수입자신용조

사는 지역에 따라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다. 구상약정서의 제출(수출자→공사)

수출자는 보증위탁의 범위와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내용을 정하는 수출신용보증 구상약정서를 제출한다.

구상약정서의 주요내용

- 보증위탁범위
- 구상권행사의 범위
- 구상에 응할 의무
- 변제등의 충당 순서
- 약정의 효력 등

라. 보증한도의 책정신청 및 통지

(공사↔외국환은행)

신용조사 완료후 매입은행 명의로 동일한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보증한도책정 신청을 하면 공사는 신청내용 및 신용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여 보증한도책정후 매입은행 앞으로 통지하게 된다.

주요심사사항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

- 어음지급인의 신용도
- 어음지급지의 국가신용도
- 어음발행인의 신용도
- 어음지급조건

- 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지급인의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결제실적

〈신용장방식 수출거래〉

-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당해영업소가 속한 국가의 신용도
-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신용도
- 어음발행인의 신용도
- 어음지급조건

마. 화환어음을 매입 및 통지

(수출자→매입은행→공사)

수출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을 보증한도 이내에서 매입한 은행은 매입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매입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통지한다.

바. 보증관계 성립

매입통지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한 경우에는 보증관계를 성립시키며 보증책임은 매입일로 소급하여 지게 된다.

보증제한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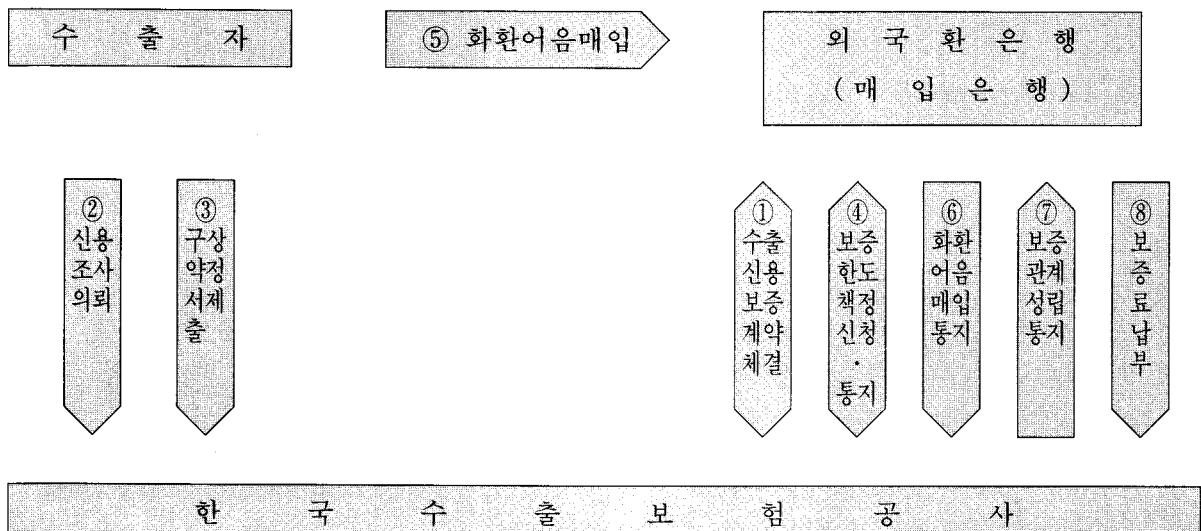
- 매입통지서의 발송이 매입일로부터 5영업일이 경과한 경우
- 화환어음금액의 90/100이 신용보증한도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 어음발행인, 어음지급인의 신용등급이 인수불가능 등급으로 사정된 경우

- 화환어음 매입일 현재 만기일연장 또는 상사분쟁중에 있는 자를 어음지급인으로 하는 경우
- 어음지급지의 국별신용등급이 인수불가능 등급으로 사정된 경우

사. 보증료 납부(매입은행→공사)

매월초부터 말일까지 매입통지한 건에 대하여 다음달초에 보증관계 성립통지와 함께 보증료 납부통지를 하게 되며 보증료는 2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용보증제도 이용절차〉



2. 보증채무 이행절차

가.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화환어음의 만기일(만기일전에 사고가 확실하게 된 때에는 그 확실하게 된 날)로부터 1개월 경과후 청구한다.

다. 보증채무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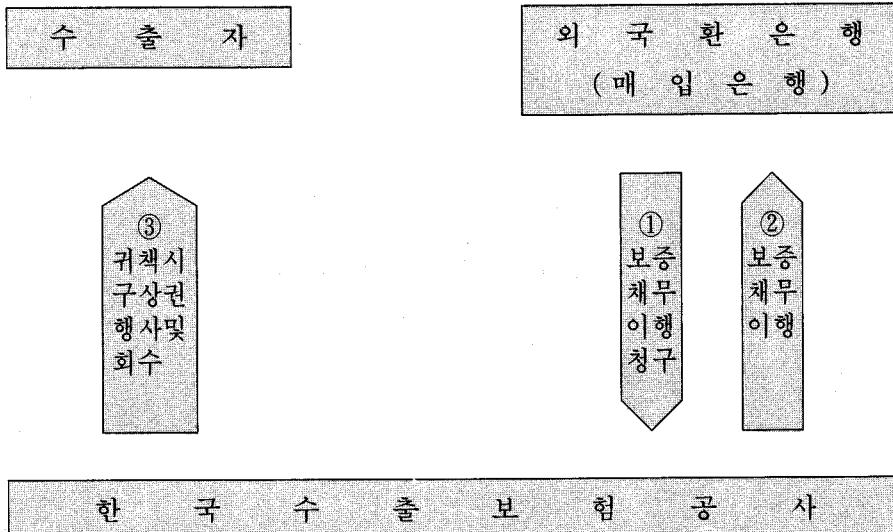
이행청구를 받은 날(만기전에 청구받은 경

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무조건 이행한다.

보증채무 이행범위 : 보증채무 이행은 실제 손실 발생액의 90%이다.

[만기미회수금 - (보증채무 이행전까지 지급받은 수출대금 + 부속화물처분 등으로 회수한 금액)] × 90%

〈보증채무 이행절차도〉



3. 구상권 행사

수출대금 미회수와 관련한 수출자 귀책여부를 판단하여 구상권의 행사여부를 결정하며 구상권 행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인수도 조건(D/A)의 경우 어음인수전화물의 인도
- 지급도 조건(D/P)의 경우 대금지급전화물의 인도
- 동일한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연속해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먼저 발행한 어

음의 만기일 경과시까지 그 어음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채 발행한 어음

- 보증대상 수출거래가 아니거나 화환어음 매입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화환어음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신청한 경우
- 수출계약의 위반등 수출자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 사유인 경우

자료제공 : 한국수출보험공사